



NO.2022-18

2022.08.12.

최근 북한의 법제정 현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2022. 8. 7.)에서 이뤄진 법제정을 중심으로-

박서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parkseohwa@kyungnam.ac.kr

이전 발행자료

- > [IFES BRIEF 2022-17]
김정은 전승절 기념연설 평가및전망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연교수
- > [IFES BRIEF 2022-16]
이란핵 협상 동향 평가와한국에주는 시사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교수
- > [IFES BRIEF 2022-15]
「비상방역법」 수정·보충과 「의료감경법」 채택의 의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박서화교수
- > [IFES BRIEF 2022-14]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평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상범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03053)서울 종로구 북촌로 15길 2
TEL. (02)3700-0700
FAX. (02)3700-0707
http://ifes.kyungnam.ac.kr
E-Mail: ifes@kyungnam.ac.kr

■ 들어가며

- 2022년 8월 7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부문법 3건이 채택되고, 기존의 부문법 1건이 수정·보충되었음.
- ※ 채택: 「의약품법」,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
- ※ 수정·보충: 「우주개발법」(2013. 4. 1. 채택)
- 부문법들의 원문이 확보되지 않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각 부문법별 특기사항과 북한의 최근 입법(“법제정”) 경향을 언급하고자 함.

■ 「의약품법」의 채택

- 「의약품법」의 채택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2. 6. 8.~6. 10.)에서 제시된 과업의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 회의에서 국가의 방영능력강화에 필수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과업의 하나로 제약공업의 현대화 수준의 결정적 제고가 거론되었음.¹⁾

1) 김옥별, “의약품생산의 활성화와 자체의 기술력량 강화”, 노동신문, 2022. 7. 31. 같은 보도에서 의약품 생산증대를 위하여 수입 대체가 필요하고 수입 대체를 위해서는 자체 기술력 강화가 관건이 됨을 강조됨. 나아가 자체 기술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도서, 실험기구 등의 보장과 지도일군의 신기술 전파자로서의 역할이 독려됨.

- 「의약품법」은 의약품 생산, 검정, 보관, 공급, 판매, 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규율한다고 소개됨.²⁾
- 흥미로운 것은, 규율대상사업에 있어서 「의약품법」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의약품관리법」(1997. 11. 12. 채택)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정·보충되는 대신 새로운 부문법이 채택되었다는 점임.
- 1997. 11. 12. 채택되고 1998. 12. 10. 수정·보충된 「의약품관리법」은 총 6장, 53조로 구성됨(장별 주제는 아래 표 참조)
- 기존의 「의약품관리법」과 새 「의약품법」의 규율대상영역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³⁾ 입법자(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왜 기존 부문법의 수정·보충의 형식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표] 「의약품관리법」(1997.11.12. 채택되어 1998.12.10. 수정·보충된 것)의 장별 구성

장	장 제목	조항	비고
제1장	의약품관리법의 기본	제1조~제8조	- 의약품관리사업: 의약품의 생산, 검정, 보관·공급, 이용 - 의약품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그것은 의료약과 예방약을 포함(제9조 제1항)
제2장	의약품생산	제9조~제16조	
제3장	의약품검정	제17조~제27조	
제4장	의약품보관과 공급	제28조~제38조	
제5장	의약품이용	제39조~제45조	
제6장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제53조	

* 출처: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하), 2017. 10., 629면 이하

- 기존의 부문법에 대한 업데이트가 꽤 오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한 필요가 생겼다는 사정이 새 부문법의 채택으로 이어졌을 수 있음.
- 기존의 「의약품관리법」의 마지막 수정·보충으로 알려진 것은 1998월 12월의 일이고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당한 업데이트의 필요가 있었으리라 짐작됨.
- △의약품 생산 증대를 위한 기술력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의 마련,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의약품 관리상 긴급한 필요의 반영⁴⁾, △의약품의 보관, 공급, 이용에서의 감독통제의 강화 등의 내용이 새 「의약품법」에 반영되었을 수 있음.
- 「의약품법」의 채택은 최근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

■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의 채택

-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의 규율하고자 하는 수속⁵⁾질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음.

2) 민주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 진행”, 2022. 8. 8.

3) 두 부문법 모두 의약품 생산, 검정, 보관, 공급, 판매, 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 그밖에도 「인민보건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에도 의약품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산재함.

4) 의약품검정을 위한 신속절차의 마련, 의약품 단위내 이용 원칙(「의약품관리법」 제40조)의 완화 등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5) 수속(手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나 단계”(표준국어대사전).

- 노동신문의 관련 보도에서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의 규율대상으로 “경제관리와 사회전반에서 수속절차”가 거론되나,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규율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움.
- 북한의 여러 부문법은 다양한 수속절차 내지 수속질서를 규율하고 있음.⁶⁾
- 이와 같은 규율에 따르면, 수속은 국가의 허가나 특허를 부여하거나 얻기 위한 신청, 심의, 승인, 등록, 증서발급 등 일련의 절차로 파악될 수 있음.
- 관련 보도에서 알려진 것만으로는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이 다양한 수속질서들에 공통되는 일반적 규율을 마련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특별히 특정한 수속절차에 대한 규율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음.

○ 비교적 확실한 것은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이, 그 명칭에서 확인되듯이, 수속질서위반행위의 방지 또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 금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위반행위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처벌의 강도나 확실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수속절차 중 일어나는 청탁이나 뇌물의 수수가 위반행위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예상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경제관리와 사회전반에서 수속절차]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등 수속질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가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관련 보도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지지됨.⁷⁾

■ 「자위경비법」의 채택

○ 관련 보도의 설명만으로는 「자위경비법」의 규율대상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자위경비’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관건이 됨.

- 관련 보도는 「자위법」은 “전민민적 자위경비체계”의 확립을 비롯하여 자위경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보위와 인민의 생명재산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함.

- 자위경비 개념이나 “전민민적인 자위경비체계”라는 표현은 종전에 자주 사용된 것 같지는 않으므로, 그들로부터 직접 부문법의 내용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음.

-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자위경비를 각 기관, 기업소, 단체 단위의 경비로 이해하는 것

※ 여러 부문법에 각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할 경비에 관한 규정들이 산재⁸⁾

※ 「소방법」상 자위소방 개념 또한 각,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담당하는 소방을 가리키고 있음.⁹⁾

○ 자위경비를 - 그와 달리 또는 그와 동시에 - ‘주민지역 내에서의 경비사업’을 가리킨다고 이

6) 「세관법」상 세관등록 및 세관수속; 「사회보장법」의 사회보장수속(제2장); 「출입국법」상 출입국수속; 「무역법」상 무역거래 관련 수속절차(제45조); 「종합설비수입법」상 종합설비반입수속(제21조); 국제철도화물수송법상 국제철도화물의 수속(제33조: 검사, 검역, 가격승인);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자들의 입출국수속절차와 방법(제10조); 「합영법」상 기업등록취소수속(제44조 제2항); 「외국인기업법」상 외국인기업의 재산 청산수속(제29조 제2항); 「경제개발구법」상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등 기업창설 관련 신청, 심의, 승인, 등록 같은 수속절차 간소화(제39조); 「살림집법」상 살림집 입사를 위한 수속(제36조); 「보험법」상 보험보상청구수속(제57조); 「발명법」상 특허권등록의 수속(신청, 심의, 등록)(제27조); 「마약관리법」상 마약의 수출입수속(제52조); 「담배통제법」상 담배, 담배생산원료, 담배생산자재, 담배생산설비 수출입수속(제15조 제3항) 등 참조.

7) 민주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 진행”, 2022. 8. 8.

8) 「기밀법」 제22조, 「귀금속관리법」 제21조, 「화학류취급법」 제22조 제1항, 「총기류관리법」 제20조 제1항, 「독성물취급법」 제24조 제1항, 「폭발물처리법」 제11조 제2항 참조.

9) 각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자위소방대를 두도록 하며(「소방법」 제42조 제3항), 자위소방대는 다시 산업소방대와 군중 자위소방대로 구분됨(제42조 제2항).

해한다면, 「자위경비법」은 2010. 7. 8. 채택된 「주민행정법」의 관련 규율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자위경비법」은 「주민행정법」에 따른 ‘주민행정(관리)사업’의 일환이 되는 ‘(주민지역안의) 경비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일 수 있음.
- ※ 주민행정사업은 “인민들의 생활전반을 책임지고 돌보는 중요한 국가관리사업”(주민행정법 제2조 제1항)으로 신분등록사업, 식량공급사업, 살림집보장사업, 먹는물보장사업, 교육교양사업, 로동행정사업, 상품공급사업, 보건위생사업 등을 포함(동법 제2조 제2항)
- ※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지역안의 경비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 (동법 제26조)

- 주민행정사업의 실행 및 지도체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도(직할시)인민위원회→△시(구역), 군인민위원회→△리(읍·노동자구·동)사무소→△기관, 기업소 또는 인민반의 위계로 이루어짐.
- 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 내 기관, 기업소, 인민반¹⁰⁾들에 대하여 담당구역을 할당(“관리담당구역제”, 「주민행정법」 제21조 제1항)
-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일반적 감독통제사업이 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맡겨진 가운데(「주민행정법」 제3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인민반에서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인민보안기관이 단속(「인민보안단속법」 제32조)¹¹⁾

■ 「우주개발법」의 수정·보충

- 2013. 4. 1. 채택된 「우주개발법」은 장 구분 없이 총 23조로 구성되며, ‘우주기구’(인공지구위성 포함)와 그 운반수단의 설계·제작·조립·발사·지상관제·운영(즉 “우주개발”)을 규율
-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 그 자체의 목적이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적하고 있으나(제3조 제2항 후단), 관련 기술의 군사적 전용(轉用)¹²⁾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음.
- 나아가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의 주체성과 자립성의 원칙을 강조하고(제3조 제2항 전단), 다른 나라가 북한의 우주개발 등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명(제22조 제2항)

- 이번 수정·보충을 통하여 우주개발의 기본원칙, 실행절차·방법에 관한 규범들이 구체화되었고, 그에 따라 「우주개발법」의 형식·구조상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관련 보도는 이번 수정·보충이 「우주개발법」 중 우주개발의 △기본원칙, △실행절차, △실행방법에 관한 규범들을 세부화, 구체화하였다고 밝힘.
- 그에 따라 우주개발의 원칙들이 추가·보강되고 관련 기관들(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 또는 우주개발기관)의 권한과 임무가 구체화되었을 수 있으나, 상세한 변화내용은 예단하기 어려움.
- 그와 아울러 장 구분이 이루어지거나 조문 수가 늘어나는 등 형식·구조상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10) 인민반은 주민지역에서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망라하여 인민위원회가 조직(동법 제9조 제2항).

11) 인민반 주도의 경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는, 배영애,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통일과 평화, 10집 2호, 2018, 224면 이하 참조. 그 중 특히 “인민반마다 마을 입구나 아파트마다 경비초소를 꾸리게 되어 있다. 경비초소의 목적은 외부인 출입통제와 방문자 신원을 체크하며 외부방문자 명단을 인민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부분 참조.

12) 예를 들어, 운반수단에 인공위성이 아니라 탄두를 부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것.

■ 마치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법제정의 이면에는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의약품법」), △행정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부패 방지(「수속절차위반행위방지법」), △주민생활의 통제(「자위경비법」), △군사적 잠재력을 보유한 연구개발의 촉진(「우주개발법」)과 같은 다양한 고려들이 작용
- 이로써 부문법적 규율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중요사항들을 근로인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주권기관’인¹³⁾ 최고인민회의(또는 그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음.
- 그 밖에도 이번 법제정사업에서 확인되는 주목할 만한 경향으로는 △여러 부문법들에 산재하는 규정들의 정리 및 통합(「의약품법」 및 「수속절차위반행위방지법」)과 △부문법적 규율의 주제·내용적 분화 또는 상세화(「자위경비법」)¹⁴⁾를 들 수 있음.

IFES 브리프 2022-18 2022년 08월 12일

발행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2 (03053)

전화: (02)3700-0700 팩스 | (02)3700-0707

홈페이지: <http://ifes.kyungnam.ac.kr>

-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IFES브리프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수시 발간하는 e-출판물입니다.

13) 「사회주의헌법」 제4조 제2항, 제87조, 제113조 참조.

14) 이와 같은 경향의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박서화, “「비상방역법」 수정·보충과 「의료감정법」 채택의 의미”, IFES Brief 2022-15, 2022. 6. 16. (<https://ifes.kyungnam.ac.kr/ifes/6578/subview.do?sessionId=74730EC132ACB109BA24DEA5E600E9B4?enc=Zm5jdDF8QEB8JTJGbWF0ZXJpYWwIMkZpZmVzJTJGMTc3OCUyRnZpZXcuZG8lM0Y%3D>) 참조.